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41 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김재원·신장식·김준형

박정현 · 서영석 · 김선민

정혜경 • 이해민 • 임오경

박은정 · 서왕진 · 황운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, 기본권 및 성인지,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권리·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「대한민국헌 법」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 ·감독권 등을 규정한 「계엄법」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 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,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 을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국방 관계 법령 교육의 의무)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「계엄법」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군인사법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성급 및 영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연 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 관계 법령 교육에 대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소속 군인의 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 고, 소속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4조의2(국방 관계 법령 교육
	의 의무) ① 국방부장관은 군
	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하
	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군인에게 「대한민국헌
	법」 및 「계엄법」 등 국방
	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
	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이
	경우 「군인사법」 제3조제1항
	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성급
	및 영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연
	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
	<u>한다.</u>
	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
	사령관은 국방 관계 법령 교육
	에 대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
	립하여 소속 군인의 교육 이수
	현황을 점검하고, 소속 군인의
	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
	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